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수산연구본부	성명	정명화	직급	연구위원	보안교육 수강여부	X
				이정미		전문연구원		O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 출장목적 : UN 제19차 공해어업협정 당사국 비공식 회의 대표단 출장 - 'BBNJ 협정이 지속가능한 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수산기구 및 관련 협정의 역할' 회의 참석 - BBNJ 협정 발효 관련 지역수산기구 논의 동향 파악 ○ 관련사업 - 「글로벌 해양수산거점 연구협력사업」(일반) (사업기간 : 2026.01.01. ~ 2026.12.31.)							
출장기간	2026.5.19.(화) ~ 2026.5.24.(일) (4박 6일)			출장지		미국 (뉴욕)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 교통수단		
	5.19.(화)	부산(07:00) → 인천(08:10) 인천(10:00) → 뉴욕(11:10)		공항 수속 및 항공 이동(환승)		KE 1402 KE 081		
	5.20.(수)	오전	UN 본부	제19차 공해 어업협정 당사국 비공식 회의 개회		-		
		오후	UN 본부	제19차 공해어업협정 당사국 비공식 회의 세그먼트 1회의				
	5.21.(목)	오전	UN 본부	제19차 공해어업협정 당사국 비공식 회의 세그먼트 2 회의		-		
		오후	UN 본부	제19차 공해어업협정 당사국 비공식 회의 세그먼트 3 회의				
	5.22.(금)	오전	UN 본부	제19차 공해어업협정 당사국 비공식 회의 세그먼트 4 회의		-		
		오후	UN 본부	대표단 종합 회의				
	5.23.(토) ~ 5.24.(일)	뉴욕(13:20)→인천(+1, 17:50) 인천(19:35) → 부산(20:45)		공항 수속 및 항공 이동(환승)		KE 082 KE 1409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①	5.20.(수) 제19차 공해어업협정 당사국 비공식 회의 - 개회
수행계획	□ (오전) 제19차 공해어업협정 당사국 비공식 회의 개회식 참석 및 어젠다 확인 - 참 석 자 :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김승룡 서기관 이주영 국제협력총괄과 연구관(해양수산부), 정명화 연구위원, 이정미 전문연구원(이상 KMI) - 주요내용 · 의장 선출 및 회의 운영 방향 설정 논의 · 잠정 의제(Provisional Agenda) 채택 과정에서 BBNJ 협정 관련 핵심 쟁점 우선순위 확인
수행결과	□ (오전) 제19차 공해어업협정 당사국 비공식 회의 개회식 참석 및 어젠다 확인 - 참 석 자 :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김승룡 서기관 이주영 국제협력총괄과 연구관(해양수산부), 정명화 연구위원, 이정미 전문연구원(이상 KMI) - 의장선출 · 한국은 UNFSA와 BBNJ 간 실질적 정합성·시너지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들어 의장으로 국제수산 거버넌스 전문성과 리더십이 뛰어난 조지 모리시타 교수를 의장으로 추천, 일본, EU 등이 지지하였으며, 컨센서스에 따라 의장으로 선출함 - 개회사 · 사무국(DOALOS)은 공해에서 어업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의 중요성과 경계왕래·고도 회유성 어족의 보존·이용에 있어 'UN공해어업협정(UNFSA)'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올해 1월 발효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BBNJ)'이 어업관리의 수단은 아니나 지역기반관리수단(ABMT), 환경영향평가(EIA), 역량강화 등 해양 거버넌스의 법적 기반을 보완하는 면에서 공해 어족자원관리에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 · 지난 비공식협의회(18차) 이후 코모로, 시에라리온 2개국이 신규 가입하여 당사국이 95개국(EU 포함)이 됐음을 알리고, 올해 당사국 비공식협의회(ICSP)는 'BBNJ 협정 발효가 UNFSA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패널 토론으로 진행함을 설명함 - UNFSA Part VII 이행지원기금 현황 · FAO와 DOALOS는 개도국의 UN Fish Stocks Agreement(UNFSA)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된 Part VII 이행지원기금을 공동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기금 운영규정(ToR)을 개정하여 일반 기여뿐 아니라 특정 사업을 지정한 기여(donor agreement)도 가능하도록 함 · 현재까지 호주, 캐나다, EU, 아이슬란드, 레바논, 뉴질랜드, 노르웨이, 미국 등이 기여하였으나, EU의 특별기여를 제외한 잔액은 약 1,679달러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금이 소진된 상태임 · EU 재원으로 추진된 「UNFSA 이행지원 프로젝트(2022~2026)」의 주요 성과로는 ▲UNFSA 인식 제고 활동 추진, ▲이행 가이드라인 개발, ▲6개 개도국 대상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글로벌 경험공유 워크숍 개최 등이며, 향후 기금 고갈 상황에 대해 당사국들의 추가 재정기여가 필요함을 강조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②	5.20.(수) 제19차 공해 어업협정 당사국 비공식 회의 - Segment 1
수행계획	□(오후) Segment 1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 참석 - 참 석 자 :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김승룡 서기관 이주영 국제협력총괄과 연구관(해양수산부), 정명화 연구위원, 이정미 전문연구원(이상 KMI) - 주요내용 · (안건 1) 유엔해양법협약이 BBN에 미치는 함의와 이를 유엔공해어족협정에 따라 회유성 어종 및 고도회유성 어종 관리에 적용하는 문제 · (Segment 1) Implications of the BBNJ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 (UNFSA)
수행결과	□(오후) Segment 1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 참석 - 참 석 자 :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김승룡 서기관 이주영 국제협력총괄과 연구관(해양수산부), 정명화 연구위원, 이정미 전문연구원(이상 KMI) - 전문가 패널의 핵심 메시지 : BBNJ는 RFMO를 대체하는 체제가 아님 · 패널 전반의 공통된 견해는 BBNJ가 기존 어업관리체계(RFMO, UNFSA)를 대체하거나 상위에서 통제하는 체제가 아니라는 점임 · BBNJ의 목적은 해양 거버넌스의 파편화를 줄이고 생태적 정합성(Ecological Coherence)을 강화하는 데 있음 · BBNJ와 UNFSA는 모두 UNCLOS를 이행하는 "자매협정(Sister Agreements)"으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 · 따라서 2027년 1월 개최 예정인 BBNJ COP1이 향후 BBNJ와 RFMO 간 협력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ABMT(Area-Based Management Tools)와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운영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됨 - FAO 및 DOALOS의 입장 · UNFSA는 단순한 어획량 관리협정이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호 의무를 이미 포함하고 있음 · 제5조(생물다양성 보호 의무), 제5조(d)(표적종·비표적종 영향 평가, 제5조(f)(혼획·오염·유실 어구 관리), 제6조(예방적 접근)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 RFMO의 기존 성과 강조 · 현재 전 세계 56개 지역수산기구(RFB)가 활동 중이며, 이 중 22개가 RFMO임 · 참치류의 약 87%는 RFMO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미 ▲어업제한구역, ▲저층어업 제한, ▲VME(취약해양생태계)보호, ▲신규어업 사전 평가, ▲OECD 및 일부 MPA 기능 등을 수행해 왔음 - 산업계(ICFA)와 NGO(DSCC)의 시각 차이 - 산업계(ICFA) · 어업은 공해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이라고 주장, RFMO는 사실상 BBNJ가 하려는 일을 이미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며 ABMT와 MPA가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밝힘 · EIA는 기존 RFMO 체계를 활용하여 중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데이터 공유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및 협력 의사를 표명함

- 환경 NGO(DSCC)

- BBNJ는 기존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해양 거버넌스 패러다임이라고 평가, 저층트롤(Bottom Trawl)이 심해생태계의 주요 위협이라고 지적함
- 신규어업뿐 아니라 기존 저층어업도 EIA 대상이 되어야 하며, 보다 강력한 생태계기반 접근을 요구함

구분	국가별 주요 입장 및 질의응답 내용
Q	(중국) BBNJ COP가 ABMT를 지정하면, RFMO 권한을 침해하는가? 기존 어업도 EIA 대상이 되는가? 신규 면허 갱신 시에도 EIA가 필요한가?
A	(아이슬란드) BBNJ는 기존 기구와 경쟁하기 위한 협정은 아니며, 권한 있는 기구와의 협력을 전제로 설계된 만큼 RFMO 권한을 대체하거나 중속시키는 체계가 아님 (ICFA) 완전히 새로운 어업활동은 EIA가 필요할 것. 다만 기후변화로 어족 이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같은 어업인지 새로운 어업인지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획일적 기준보다는 사례별 검토가 필요할 것 (DSCC) 유엔총회 저층어업 결의는 신규 또는 기존 여부와 관계없이 EIA 실시를 요구하며, 일부 RFMO는 주기적 EIA 갱신제도를 운영 중이므로 EIA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함
시사점	EIA 적용 범위는 아직 국제적 합의가 없으며, COP1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기존 어업의 재허가(renewal)” 문제는 향후 BBNJ-어업 분야 갈등의 핵심이 될 수 있음
Q	(노르웨이) RFMO의 ABMT가 실제로 MPA 역할을 수행한 사례가 있는가? RFMO 조치와 BBNJ 조치는 동일 해역에서 중첩될 수 있는가? (EU) BBNJ와 RFMO간 의사결정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정부 내 부처 간 입장 차이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해운·광물개발 부문도 논의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A	(FAO) 이미 많은 RFMO가 어업금지구역, 저층어업 제한구역 등을 운영중이며, 일부는 실질적으로 MPA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북대서양에서는 RFMO와 Regional Seas Convention간 협력 사례 존재 (DOALOS) NEAFC, NAFO, CCAMLR 사례와 이들 기구의 OECM, 어업제한구역, 생태계 보호조치 등의 운영을 소개함 (ICFA) 어업부문에서도 자발적 보호조치가 존재하며, 남아프리카에서는 업계가 자발적으로 저층어업을 동결하고 MPA 설정을 지시한 사례를 소개함
시사점	RFMO와 BBNJ의 공간관리수단은 상호 배타적이기보다 중첩·연계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논의는 “중복 가능 여부”보다 “조정 메커니즘 구축”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Q	(영국) BBNJ가 기존 어업관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A	(FAO) RFMO는 어업 분야에서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운, 심해광물개발, 환경 분야까지 포괄하지는 못함. BBNJ는 이러한 분야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의장) RFMO의 약점은 일률적이지 않는데, 이러한 원인은 지리적 공백, 어종 공백, 법적 권한 부족, 재정 및 인력 부족 등 임. 따라서 RFMO별로 다른 협력 모델이 필요함
	시사점	BBNJ는 RFMO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RFMO가 다루지 못했던 부문 간 조정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이해되고 있음
	Q	(피지) UNFSA 체계만으로는 산업적 대규모 어업의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함. BBNJ EIA가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가? ABMT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임
	A	(DSCC) 피지의 의견에 동의하며 생물다양성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할 것임 (FAO) 기존 RFMO도 이미 다양한 공간관리조치를 운영중이며 향후 BBNJ와 연계될 수 있음
	시사점	태평양 도서국과 환경 NGO는 BBNJ를 활용한 보다 강력한 보호조치를 지지하는 반면, 산업계와 일부 RFMO 회원국은 기존 RFMO 체계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는 향후 COP1의 대표적 정책적 대립축이 될 가능성이 있음
	한국 입장	건강한 해양생태계가 지속가능한 어족자원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BBNJ 협정은 UNFSA 이행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함. 또한 BBNJ와 UNFSA-RFMO 간 정합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RFMO가 축적한 자원평가, 데이터 관리, MCS, EAFM 등의 전문성이 향후 ABMT 및 EIA 이행 과정에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아울러 CBD 사무국이 운영 중인 SOI를 기구 간 협력의 유용한 사례로 소개하였음
업무③	5.21.(목) 제19차 공해 어업협정 당사국 비공식 회의 - Segment 2	
수행계획	□ (오전) Segment 2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 참석 - 참 석 자 :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김승룡 서기관 이주영 국제협력총괄과 연구관(해양수산부), 정명화 연구위원, 이정미 전문연구원(이상 KMI) - 주요내용 · (안건 2) 유엔공해어족협정 및 BBNJ 협정 하에서,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의 역할 · (Segment 2) The Role of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Arrangements (RFMOs/RFMA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BBNJ Agreement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수행결과	□(오전) Segment 2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 참석 - 참 석 자 :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김승룡 서기관 이주영 국제협력총괄과 연구관(해양수산부), 정명화 연구위원, 이정미 전문연구원(이상 KMI) - RFMO는 BBNJ 이행의 핵심 협력기구 · RFMO는 BBNJ 협정상 관련 국제기구(IFB)로서 협력과 조정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RFMO가 오랜 기간 축적한 과학적·기술적 전문성, 자원평가, 데이터 관리 경험은 BBNJ 이행에 필수적인 자산으로 평가됨 · ICCAT 사례처럼 일부 RFMO는 이미 BBNJ 관련 의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COP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협력 메커니즘 구축이 최우선 과제 · 다수 국가와 국제기구는 ABMT, MPA, EIA 등 개별 제도를 확대하는 것보다 먼저 BBNJ-RFMO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 주요 과제로는 ▲의사결정 일정의 동기화, ▲정보 공유 체계 마련, ▲RFMO의 COP 참여 보장, ▲RFMO 간 수평적 협력 강화, ▲국가 내 부처 간 정책 정합성 확보 등이 제시됨 - RFMO 간 역량 격차 문제 · ICCAT, NAFO 등 경험이 풍부한 RFMO와 신생 RFMO 간에는 역량 차이가 존재함. 따라서 BBNJ 이행 과정에서 재정·기술 지원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BBNJ 체계가 확보하게 될 자원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RFMO와 연계할 필요성이 강조됨 - EIA와 RFMO의 역할에 대한 논의 · EIA는 향후 BBNJ 이행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의제로 평가됨. 일부 국가는 RFMO가 수행해 온 기존 영향평가와 BBNJ EIA 간 중복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며, EIA 결과를 RFMO 관리체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이에 대해 BBNJ상 EIA 의무는 RFMO가 아니라 당사국에 부여되는 것이며, RFMO는 관련 정보와 전문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제시됨 - 대한민국 발언 · 우리나라는 RFMO가 단순한 자원관리기구를 넘어 예방적 접근, VME 보호, 혼획 저감, MCS, 선원 인권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함 · 또한 원양산업발전법 정비, 부산 PSMA 교육허브 운영 등 한국의 경험을 소개하며, RFMO와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과학·기술·관리 전문성이 향후 BBNJ의 ABMT 및 EIA 이행 과정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업무④	5.21.(목) 제19차 공해 어업협정 당사국 비공식 회의 - Segment 3
수행계획	□(오후) Segment 3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 참석 - 참 석 자 :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김승룡 서기관 이주영 국제협력총괄과 연구관(해양수산부), 정명화 연구위원, 이정미 전문연구원(이상 KMI) - 주요내용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안건 3) BBNJ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특히 해당 협정 하의 기구들과의 협력 및 조정 측면에서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및 협정, 그리고 그 회원국들이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 · (Segment 3)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RFMOs/RFMAs and Their Members in Implementing the BBNJ Agreement
수행결과	□(오후) Segment 3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 참석 - 참 석 자 :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김승룡 서기관 이주영 국제협력총괄과 연구관(해양수산부), 정명화 연구위원, 이정미 전문연구원(이상 KMI) - BBNJ-RFMO 협력의 핵심은 '제도화된 협력체계 구축' · 참석자들은 ABMT나 EIA 자체보다 BBNJ와 RFMO 간 실질적 협력 메커니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를 위해 ▲RFMO 내 BBNJ 연락관(Focal Point) 지정, ▲정례협의체 운영, ▲정보공유 체계구축, ▲RFMO의 COP 참여 확대, ▲협의절차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EIA 중복 문제와 역할 분담이 핵심 쟁점 · (에콰도르) RFMO가 수행하는 영향평가와 BBNJ EIA 간 중복 가능성을 우려함 · (중국) 기존 어업, 허가 갱신, 신규 사업자 진입 등의 경우 EIA 적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질의함 · (미국) "not undermining" 원칙은 단순한 중복 방지가 아니라 기존 RFMO 체계를 약화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 (NRDC) BBNJ상 EIA 의무는 RFMO가 아니라 당사국(State Party)에 부과되는 의무라고 설명함 · (RFMO) EIA 수행기관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함 - RFMO의 기존 성과를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 GFCM, ICCAT 등은 이미 ▲생태계 기반 접근, ▲예방적 접근, ▲과학적 자원평가, ▲공간 관리조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 참석자들은 BBNJ가 기존 RFMO 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 정보공유와 CHM(Clearing-House Mechanism) 중요성 · BBNJ 협정의 정보공유 플랫폼(CHM)이 아직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RFMO와 BBNJ 간 정보교환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과학자료, 해양환경 데이터, 자원 평가 결과 등의 공유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대한민국 발언 · 한국은 이번 세그먼트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BBNJ-RFMO 협력 방향을 제시한 국가 중 하나로써, BBNJ와 RFMO 간에는 일부 업무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권한 충돌이 아닌 기존 전문성 활용의 기회로 보아야 한다고 제시함 · BBNJ EIA는 포괄적으로 운영되되, 기존 RFMO 관리체계와의 중복은 최소화, '절차적 진입점(procedural entry points)'을 실제 협력 채널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⑤	5.21.(금) 제19차 공해 어업협정 당사국 비공식 회의 - Segment 4(역량강화)
수행계획	□(오전) Segment 4(역량강화)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 참석 - 참 석 자 :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김승룡 서기관 이주영 국제협력총괄과 연구관(해양수산부), 정명화 연구위원, 이정미 전문연구원(이상 KMI) - 주요내용 · (안건 4) 역량강화(capacity-building)의 확대 · (Segment 4) Capacity-Buildi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for Sustainable Fisheries under the BBNJ Agreement
수행결과	□(오전) Segment 4(역량강화)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 참석 - 참 석 자 :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김승룡 서기관 이주영 국제협력총괄과 연구관(해양수산부), 정명화 연구위원, 이정미 전문연구원(이상 KMI) - 개도국의 역량 부족 문제 · 많은 개도국은 풍부한 해양생물다양성과 어업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과학조사 역량,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역량, 법·제도 구축역량, 국제회의 참여 역량 등이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BBNJ 협정 이행이 특정 국가에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기술이전(Marine Technology Transfer)의 중요성 · 해양과학조사, 자원평가, 해양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전자 모니터링 등의 기술을 개도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인도네시아는 RFMO가 보유한 과학자료와 자원평가 방법론이 BBNJ 이행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함 - 대한민국 발언 · 한국은 역량강화, 해양기술 이전이 BBNJ와 지속가능어업을 위해 핵심적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과학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MCS, ABMT, EIA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 해양공간계획, 개도국 내 법·제도 구축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다만 RFMO, FAO, DOALOS, BBNJ 등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역량강화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강조함
업무⑥	5.21.(금) 제19차 공해 어업협정 당사국 비공식회의 - Segment 4(협력방안) : 대표단 종합회의
수행계획	□(오후) Segment 4(협력방안)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 참석 - 참 석 자 :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김승룡 서기관 이주영 국제협력총괄과 연구관(해양수산부), 정명화 연구위원, 이정미 전문연구원(이상 KMI) - 주요내용 · (안건 4) 협력·조정의 강화 등을 통해, BBNJ 협정이 지속가능한 어업에 미치는 함의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도전과 기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Segment 4) Capacity-Building,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for Sustainable Fisheries under the BBNJ Agreement - 대표단 종합 회의 · 회의 마무리 및 대표단 종합 회의 참석 · 전체 세션 논의 결과 요약 및 주요 쟁점 정리 · 향후 협상 의제 및 논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국가별 입장 차이 및 쟁점별 협상 구도 재확인
수행결과	□ (오후) Segment 4(협력방안)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 참석 - 참 석 자 :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김승룡 서기관 이주영 국제협력총괄과 연구관(해양수산부), 정명화 연구위원, 이정미 전문연구원(이상 KMI) - RFMO-BBNJ 협력체계 구축 · 일본은 개별 RFMO가 글로벌 협정인 BBNJ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FAO가 RFMO 전체를 연결하는 조정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RFMO의 역할에 대한 시각 차이 · (러시아) 현재 RFMO 체계만으로도 충분하며, 문제는 규범 부족이 아니라 이행 부족임을 꼬집으며, BBNJ가 RFMO 보다 우위에 놓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함 · (에콰도르) BBNJ는 새로운 국제기구가 아니라 협정임. 실제 이행은 RFMO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FAO의 향후 계획 · 국가 차원, 지역 차원, 글로벌 차원 모두에서 BBNJ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특히 CHM, 데이터 공유, RFB 사무국 네트워크, GEF 프로젝트 등을 활용하여 RFMO 간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앞으로 논의가 나아갈 방향 · FAO는 이제 원칙적인 논의가 아닌 실무적·기술적 논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함 · 2026년 FAO 수산위원회(COFI), 향후 BBNJ COP 등에서 RFMO와의 협력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임을 설명함 · EU, 일본, 중국, 한국 등 다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COP1이 개최되기 전에 RFMO가 BBNJ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음 · 2027년 1월 예정인 COP1이 BBNJ-RFMO 관계 형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참여국 대부분이 COP1의 중요성을 언급한 만큼, 향후 COP1에서 ABMT, EIA, STB(과학기술기구), CHM, 협력 절차 등 핵심 운영규칙이 논의하기로 함 · 따라서 2027년은 제20차 공해 어업협정 당사국 비공식 회의(ICSP-20)가 개최될 예정이며, 주 의제는 2028년 검토회의 준비, UNFSA, PSMA, 준수협정 등의 효과적 이행 방안 논의 등이 포함될 예정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

[붙임] 현장 사진

참여국 등 발언



전문가 발표

